

서방의 대러시아경제제재의 내용과 우리의 대응방안

김영옥

법무법인 경연 선임 외국변호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I. 들어가며

미국, EU 등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2014년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함에 따라 개시되었으며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EU등이 주도하는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핵문제, 남·북·러 경제협력 등을 추진함에 있어 서방의 대러시아 정책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하다 방관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러시아와 극동개발협력을 확대하여 유라시아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배경, 내용 및 제재우회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신정부는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기구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러시아 극동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9-Bridge 전략을 추진할 것을 러시아에 제안한바 있다. 9-Bridge에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의 한류 협력사업이 포함된다.

다만 신정부가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기 언급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개선,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완화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국제정세와 경제협력을 분리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또한 투자 규모가 큰 9-Bridge사업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인들이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싶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작지만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떠오르는 유라시아 지역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내용과 그 우회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내용과 제재 우회 방안

1.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경제제재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제재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권능 있는 국제기구나 국가가 국제법이나 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행해지는 징벌적인 경제적 강제조치’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외경제원조의 철회, 특정물품의 수출입 금지나 규제, 수출관련 금융지원금지, 자금거래금지, 대상국가의 해외자산 동결, 국제금융기관의 지원 반대, 기술이전 및 자본이동의 금지나 규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⁰¹.

지역적 협정 및 기관에 의한 경제적 강제조치는 UN현장의 목적과 합치하는 경우 또는 자위권행사로서 경제적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국제법 상 권능 있는 국제기구의 결의에 의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국가에게 법적 제재를 위임하는 조약상의 근거 없이 개별국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취해지는 타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제조치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제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경우처럼 자국의 국내법을 역외 적용, 실질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는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져 왔다⁰².

국제법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관할권 내에서 행해지는 법률행위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자 및 관련 기업(미국인

⁰¹ Dianne E. Rennack & Robert D. Shuey, Economic Sanctions to Achieve U.S. Foreign Policy Goals : Discussion and Guide to Current Law, 1998, p.1.

⁰² Sarah H. Cleveland, Norm Internationalization and U.S. Economic Sanctions,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6, 2001, p.4.

또는 기업이 50%이상 지분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나, 미국이 지정한 제재대상 기업 및 개인과 거래할 경우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⁰³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 및 금융지원 등이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국제거래의 경우 달러를 결제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대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의 재무통제절차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이나 EU가 지정한 제재리스트 기업/기관들과 거래할 경우 대금지급심사 강화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지급 유예 등)을 받을 수 있음으로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대러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방의 대러 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러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재 우회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1) 미국의 대러 제재 관련 법령

미국은 국가안보와 대외경제제재를 목적으로 매우 방대하며 다양한 법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법령으로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 등이 있으며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법을 역외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대외무역통제를 위한 규제는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등의 3개 부처에서 전담행정조직을 두고 이행하고 있다. 상무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국제비상경제법, 수출관리법 등에 명시된 수출통제권한을 행사한다. 국무부는 국방교역통제실(Office of Defence Trade Controls: ODTC)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개발된 미국산 물품과 기술 수출 및 재수출을 규율하는 국제무기교역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ns: ITAR)에 근거하여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재무부의 경우 대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s: OFAC)을 통하여 러시아와 거래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경제적인 거래를 금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Presidential Executive Order) 및 OFAC의 대

⁰³ <http://time.com/4911882/north-korea-u-s-secondary-sanctions-china-russia-treasury/>

외자산통제규정을 이행한다.

미국의 대외경제제재법제는 규제조치를 취함에 있어 미국 영역 밖에 소재하는 회사와 물품 및 기술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의 대러 제재 분야 및 특징

미국은 2014년 3월 EU와 함께 러시아 경제제재에 착수했다. 제재초기(2014.3~2014.7)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⁰⁴과 단체⁰⁵에 대하여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등 낮은 수준의 제재를 하였으나, 이후 러시아의 미국대선 개입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적성국대항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 Act)’ 적용을 통해 기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강화와 더불어, 파이낸스, 자원, 철도, 금속 광산을 운영하는 관계자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하였다.

미국은 2014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고립을 확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 명령을 제정하여 러시아 경제성장을 압박하고 산업 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분야⁰⁶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⁰⁴ 러시아 고위정치인인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 블라디미르 수르코프 대통령 보좌관 포함 7명과 크림 자치공화국 정치인인 세르게이 악쇼노프 총리와 의장 포함 2명,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포함 2명 등 총11명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이후 대통령의 축근으로 개인 제재대상(SDN) 확대

⁰⁵ 러시아 국영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및 에너지 기업 포함, 17개 단체에 대한 제재로 시작하여 추후 대상 기업 확대

⁰⁶ 미국의 대통령령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660호(14.3.6), 13661호(14.3.16), 13661호(14.3.20), 13662호(14.9.12), 13685호(14.12.19), 적성국대항제재법(17.8.2) 제215~233조 이하 참조

[표 1]

경제 분야	제제 품목
오일/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분야 기업 및 자회사에 대한 제재 채굴장비, 정제기술 부품 등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 금지 관련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금지 신규 계약 및 프로젝트에 대한 동결 ▶ 제재대상: Rosneft(지분 50%이상 소유 계열사 포함), Novatek, Gazprom(계열사 포함), Lukoil, Transneft, Gazprm Neft, Surgutneftegaz 등
금융/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및 금융자원 유입을 제한 ▶ 금융제재대상: Sberbank, VTB, Gazprombank, Rosselkhozbank, Vnesheconombank, Bank Moskvy 금융제재대상은행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대출 금지
군·산복합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수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전자제품 등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 제한 ▶ Uralvagonzavod, Oboronprom, United Aircraft Manufacturing Corporation 등에 대해서는 자금 대출 금지 추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 관료, 기업인 등 일부 인사에 대한 계좌동결, 자산압수, 미국비자발급 거부 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클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EU내 수입금지 ▶ Chernomorneftegaz(Black Sea Oil and Gaz), Sebastopol Sea Port, Kerch Sea Port, Kerch Ferry Company, Azov Distillery, Massandra Winery 등 회사에 대한 크림 지역에서의 투자, 수출 금지
2017년 8월 2일 미국의 적성국대항제재법에 의해 확대·강화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대상기업 확대 :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철도, 금속 광산을 운영하는 국유기업 관계자 등 포함 금융 분야에 대한 제재 수정 : 14일(기존 30일)을 초과하는 대출 등의 금지 에너지 분야 제재 수정 : 60일(기존 90일)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금지하고 러시아 기업이 33%(기존 50%)이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금지 등 규제 강화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개발에 투자, 지원, 용역, 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국유자산 민영화 투자 또는 민영화 촉진에 기여 하는 행위 금지 등 포함

(3) EU의 대러 경제제재

EU회원국들은 단독으로 경제제재를 실시할 권한을 보유하나,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 의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선언하면서 개별회원국 차원의 독자제재를 거의 취하지 않고 EU차원

의 제재만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제재결정과 규칙은 각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EU차원에서 강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OFAC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U는 2017년 12월 EU이사회에서 2018년 7월31일까지 대러 경제제재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나 독일 산업연맹(BDI)을 비롯하여 프랑스(FNSEA : 농업경영자총연맹), 이탈리아서비스관광산업협회, 동유럽위원회 등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큰 단체들은 대러 제재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⁰⁷.

이탈리아 최대 석유가스기업인 ENI는 2017년 5월 제재대상 기업인 러시아 Rosneft와 바렌츠해와 흑해에서 탐사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협력 협정을 체결(기존 MOU 개정)하고 러시아 또는 해외에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등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제재를 우회하여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⁰⁸. 독일의 경우도 197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등 연료수입을 하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서방의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Gazprom과 발트해 가스관 라인 공동건설에 대한 협약을 강행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EU제재의 특징은 2014년 제재이전 체결된 계약(투자)에 대해서는 소급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 6개월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석유/가스 포함)과 달리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4) 일본의 대러 경제제재

일본은 2014년 8월, 9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대러 제재를 실시하였으나 에너지 분야 및 신규용자는 제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2016년 9월7일 제2차 동방경제포럼 직후 갈루쉬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일본을 방문, 경제산업상 겸 러시아경제협력담당관인 세코 히로시게와 만나 ①극동러시아 선도

⁰⁷ Copia and Cogeca : Commission aid package is insufficient
(<https://farming.co.uk/news/copa-cogeca:-commission-aid-package-is-insufficient/>)

⁰⁸ Eni, Italy and the oil, Descalzi: “let's go back to Iran, let's stay in Libya and in Russia”
(<https://www.planet360.info/en/eni-italy-and-the-oil-descalzi-lets-go-back-to-iran-lets-stay-in-libya-and-in-russia/>)

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기 진출한 일본기업 및 신규 진출사업에 대한 투자 ② 러일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 플랫폼 구축 ③극동 의료발전을 위한 내시경 및 재활센터 설립 ④사할린과 흑가이도 간 에너지 다리 건설 ⑤북극항로 개발과 우주선 발사장인 ‘보스토치니’를 기반으로 한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등 5개 분과 18개 분야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제재와 병행하여 러시아와의 우호협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⁰⁹.

(5)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는 2014년 8월 5일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하여 조치를 강구하라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8월 6일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국가들로부터 농산물 등 수입을 1년간 금지, 제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으로서 대응을 시작하였다.

[표 2] 러시아의 대서방에 대한 수입금지(2014~2015)¹⁰

수입금지 품목	영향	비고(손실)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축산 산업 육성 효과 •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 확대 	덴마크: 8.9% 미국: 7%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 유통 시스템 개선 • 수산물 거래 시장 건설 • 브라질,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 확대 	노르웨이: 70%
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제품 유통 시스템 개선 •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나 2014~2015년에는 러시아 유제품 60~90% 이상 시장 점유 	EU 우유: 16% 버터: 30% 치즈 등: 63%
야채·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 시스템 개선 • 모로코, 남미 국가로부터 수입 확대 	

09 <https://www.jbic.go.jp/ja/information/press-2016/1216-52213>

10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оссии: ожидания и реальность (http://rustem-nureev.ru/wp-content/uploads/2017/11/13640_NUREEV_Economicheskie_sankcii_protiv_Rossii_%D0%90%D0%B2%D1%82%D0%BE%D1%80%D1%83-1.pdf)

3. 대러 제재 우회방안

(1) 대러 경제제재의 우회 원칙

우리나라는 대러 경제제재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만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면 분쟁의 여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정부 간 사업 및 협약 체결 등은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향후 러시아 경제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을 대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고 MOU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아래는 제재참가국에 포함된 나라의 제재우회 사례이다.

- 노르웨이 정부와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간 체결된 북극해 지질데이터 교환 협정
- 일본의 공적 기관이 일러 간 진행되는 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례
 -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일본 국책회사 및 민간기업 마루베니(일본 종합상사)와 협력, 러시아 사할린 남서 해역에서 탄화수소 탐사사업을 하기로 Rosneft와 MOU체결
 -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사하공학국 루스기드로와 극동지역에서의 풍력발전소 건설·보급에 대한 MOU체결

② 제재대상 기업목록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사업, 행위에만 제재가 국한되어 있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재대상 에너지기업목록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석유 가스의 판매와 관련한 사항은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저촉되지 아니한다.

- 2017년 6월 Rosneft와 BP는 유럽에서 BP가 러시아산 가스를 판매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

③ 제재이전 체결된 협정 등의 이행은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 2016년 6월 Rosneft와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인 Statoil이 마가단 광구 시추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2년 유럽 제재이전 체결된 협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행 가능

(2) 제재 우회방안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하여 러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면 다음 몇 가지 제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신규 사업 개발보다는 기존 사업들을 재검토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체결된 한러 양국 간의 모든 법률 문서는 EU 및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와 관련 없이 이행 가능하므로 새롭게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을 보완하여 우선 추진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경제제재 민감 분야보다는 한러 양국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

예를 들어 수산클러스터(양식업, 수산물 유통 센터 등 포함), 연해주곡물터미널, 한러 의료지원센터, 중소기업단지, 농·식품 가공단지, 극동IT산업단지 등의 프로젝트는 러시아에 대한 민감 투자 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극동은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어 초기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최근 연해주정부는 경제특구를 지정, 진출 기업들에게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양국의 경제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③ 대러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 활용

유라시아 개발은행(Eurasia Development Bank)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은행으로 제재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정부 간 프로젝트의 시행 등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④ 국제거래 시 미국 달러가 아닌 화폐로 결제하는 것도 고려

러시아 극동 지역의 Primsotsbank는 아시아 화폐(CNY, JPY, KRW)로 결제 가능하며, 중국, 일본, 한국 내 대리계좌가 있어 아시아 국가와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만일 대러 경제제재로 인하여 거래 시 대금 지연 등이 우려된다면 중소규모 투자 등에는 활용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기 언급된 내용은 한러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책은 되지 못하므로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들이 유라시아 지역 특히 러시아 지역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동안 더디게 논의되어온 한러 FTA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FTA 협상 등을 통하여 양국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러 투자 및 시장접근에 장벽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경우 기술표준, 위생 검역, 건설 허가 등도 러시아 표준을 사용하거나 우리 와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무역장벽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또한 한러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등을 활용하여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하여 투자가 위축된 상황을 정치적 출구를 통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일러 정 상회담을 활용하여 8개 분야 경제협력 방안을 확정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별 68건의 양해 각서를 체결, 역대 최대 규모의 대러 경제협력에 합의한바 있다. 물론 협의된 사항이 모두 이행되지는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기회를 만들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III. 결론을 대신하여 : 평가와 시사점

러시아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북방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이자 교두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또한 신북방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 국가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가이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우리와의 교역도 전년대비 38%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7년 기준 한국의 대러 누적투자는 총 536건, 25억3,0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양국 간 경제관계는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준에 40%-50%정도 밖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이미 2010년에 나온바 있다¹¹.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북·중·러 3국이 만나는 극동지역 개발을 푸틴 정부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푸틴의 신동방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지점에서 서방의 대러 제재를 극복하고 양국이 상호 발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¹¹ 정여천 외,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한러 경제협력”,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문헌

Dianne E. Rennack & Robert D. Shuey, Economic Sanctions to Achieve U.S. Foreign Policy Goals : Discussion and Guide to Current Law, 1998

Sarah H. Cleveland, Norm Internationalization and U.S. Economic Sanctions,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6, 2001

정여천 외,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한러 경제협력”,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he future of Transatlantic Sanctions on Russia: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the-future-of-transatlantic-sanctions-on-russia>)

Все санкции Запада против России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1055587>)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оссии: ожидания и реальность

(http://rustem-nureev.ru/wp-content/uploads/2017/11/13640_NUREEV_Economicheskie_sankcii_protiv_Rossii_%D0%90%D0%B2%D1%82%D0%BE%D1%80%D1%83-1.pdf)

미국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660호(14.3.6), 13661호(14.3.16), 13661호(14.3.20), 13662호(14.9.12), 13685호(14.12.19), 적성국대항제재법(17.8.2) 제215-233조

The U.S. Imposes Secondary Sanctions on Chinese and Russian Firms over North Korea:(<http://time.com/4911882/north-korea-u-s-secondary-sanctions-china-russia-treasury/>)

Copa and Cogeca : Commission aid package is insufficient

(<https://farming.co.uk/news/copa-cogeca-commission-aid-package-is-insufficient/>)

ロシア連邦政府機関、資源関連企業及び金融機関等との間で融資契約及び業務協力協定等を締結「8項目の

協力プラン」に基づき、日露首脳会談の機会を捉えて日露経済協力及びビジネスの活性化を支援

(<https://www.jbic.go.jp/ja/information/press-2016/1216-52213>)